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85호 2026. 7. 8.(수)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장의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 고】

제2026-197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26-1979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기준인력으로 배정한 통합돌봄 인력 16명을 정원 조례에 적시 반영하여,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1) 조직 총괄

< 현 행 >		< 개 정 >
기구	• 본청 : 4국 4실 27과 141팀	• 변동없음
	• 직속기관 : 2기관 8과 33팀	
정원	• 총 1,149명	• 총 1,165명 (+16명)

* 의회사무국(1국 3팀), 직속기관(2기관 8과 33팀), 읍·면·동(16개 52팀) 변동 없음

나. 공무원 정원

1) 정원 변동사항

◆ 총 정원 : 1,165명 ('26년 기준인력 16명 증원)

현 재	개 편 안
집행기관의 정원 : 1,12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집행기관의 정원 : 1,13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 (2026년 기준인력 배정 결과)

합 계 구 분	28	통합돌봄				자살예방	
		소계	본청	읍면동			
국가정책	21	20	4	16		1	
구분		드론 특화도 시	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스마트농업 육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산불재난 예방업무	차량관리 특사경 업무
지역현안	7	1	2	1	1	1	1

※ 통합돌봄 읍면동 배정인력 16명을 제외한 12명은 2026년 2월 既반영

2) 정원 책정 기준

○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 변경 없음

구 분	일 반 직	별 정.정 무 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일반직 공무원 : 변경 없음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이내	28%이내	32%이내	25%이내	7%이상	1% 이내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변경 없음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 별정직 공무원 : 변경 없음

기 준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현 재	비 율	50% 이내		50% 이상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 재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149			-		
정무직(시장)		1	1				
일반직 계		1,101			-		
3급		1	1				
4급		7(1)	4	1	2(1)		
5급		54	31	2	5	-	16
6급 이하		1,039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1			-		
연구직 계		10			-		
연구관		-					
연구사		10	9		1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전문경력관 계		2			-		
나군		2	-				

개편안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165			-		
정무직(시장)		1	1				
일반직 계		1,117			-		
3급		1	1				
4급		7(1)	4	1	2(1)		
5급		54	31	2	5	-	16
6급 이하		1,055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1			-		
연구직 계		10			-		
연구관		-					
연구사		10	9		1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전문경력관 계		2			-		
나군		2			-		

※ 괄호()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 화 : 041-840-2243 / FAX : 041-840-37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041-840-2243)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3707

공주시 공고 제2026-1979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2024년 6월 기준 민간 배달앱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2%, 쿠팡이츠 21.0%, 요기요 16.2%로 빅3가 96.4%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이에 공주시는 2021년 민간 배달플랫폼(「휘파람」)과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면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들에게 이용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배달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타 시·군 제정 사례 : 경기 남양주시 ^{2025.07.31. 제정}, 부산 사하구 ^{2025.11.07. 제정}, 전북 김제시 ^{2025.12.16. 제정},
경북 영주시 ^{2026.04.27. 제정}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마.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바.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제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경제과(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283, -8282 / FAX: 041-881-6817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 찬·반에 대한 의견 등

입법예고(안)	찬·반 여부		의견 또는 사유
	찬성	반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 나. 공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배달앱
2. “가맹점주”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배달앱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공공배달앱 이용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판촉활동 지원사업
3. 공공배달앱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
4. 캐시백 적립 등 공주사랑 상품권 연계사업
5.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 및 협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청남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공공 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